

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01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8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제2항 중 사회복지시설위탁계약 기간이 “5년이내”에서 “5년”으로 개정됨에 따라 「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(위·수탁 협약) 재위탁 기간을 정비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제7조 제2항의 3년 단위 재위탁 기간 내용을 삭제하고, 재계약 재위탁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도록 함.(안 제7조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: 해당 없음

□ 사전예고

- 입법예고 : 2017. 6. 28. ~ 7. 18. (20일간)

- 예고결과 : “의견없음”

□ 참고사항

- 현행조례(전문)

- 장애인 복지시설 및 예산지원 현황

□ 붙임자료

- 현행조례 : 붙임4

- 방침결정문 : 붙임5

- 시설현황 : 붙임6

< 불임 1 >

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“안산시(이하 ‘시’라 한다)에”를 “안산시(이하 ‘시’라 한다)가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, 재계약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협약 체결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계약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.

소관 실·과		사회복지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사회복지과장 박 부 옥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장애인복지시설팀장 정 소 우
	담당자 성명·전화	구본석 (행정 2203)

< 복입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설치) 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에 설치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설치) 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가 설치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.
제7조(위·수탁 협약) ①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평가실적에 따라 3년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규정에서 정 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 며, 평가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	제7조(위·수탁 협약) ①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, 재계약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 ③ <삭제>